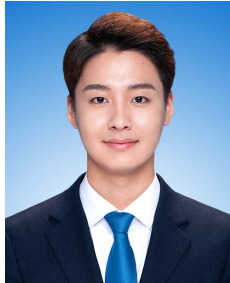


# 특허법 기초GS



## profile

특허법 강사 한승준  
제55회 변리사시험 합격

pilothan55@gmail.com

## 최근 특허법 시험의 유형

최근 변리사 2차시험의 기출문제는 크게 사실관계가 애매한 문제, 불의타 문제(논문 기반의 문제 등), 대법원 판례를 크게 물어보는 문제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 강의 대상

**중요 판례 및 그 타당성의 검토**에 관하여 깊은 지식을 원하는 수강생

논문, 쟁돌 쟁점은 함부로 접하기 두렵지만 일정 수준의 대비는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수강생

기출문제와 같이 '**애매한 사실관계**'에서 어떻게 대처할지 알고 싶은 수강생

**선결논점**을 무엇으로 해야할지, **목차**는 어떻게 잡는 것인지 막막한 수험생

## 「한특허법 제1판」 특징

(1) 본 강의는 「한특허법 제1판」을 사용하여 진행될 예정입니다. 2차시험 답안을 작성함에 있어서 필요한 덕목은 크게 두가지로 요약됩니다. 첫 번째는 **내용의 정확성**(판례의 정밀도, 학설과 검토의 논거 등 논점 자체를 서술하는 완성도)이며, 두 번째는 **목차의 논리성**(출제자가 요구하는 논점을 잡았는지, 논점을 잘 배열하였는지)입니다. 본 서는 두 가지 덕목을 모두 갖추기 위한 방향으로 서술되었습니다.

(2) 본서는 판례의 비중을 최대한 높인 기본서를 만들자는 목적하에 서술되었습니다. 각 규정의 의의 및 취지는 판례가 있는 경우 최대한 **판례가 실시한 의의 및 취지**로 서술하였습니다. 또한, 판례의 원문을 최대한 살리는 방향으로 서술하였습니다.

(3) 대법원 판례를 크게 물어보는 문제를 대비하기 위하여, 판례가 선결적으로 법규정을 언급하거나 관련 법리를 실시하는 경우, 이를 목차화하여 정리하였고, 특히 전원합의체 판결의 경우 다수의견, 소수의견 등에서 실시된 법리를 답안지에 적을 수 있는 분량으로 정리하였습니다.

(4) 수험의 편의를 위하여 각주의 양을 늘리지 않는 선에서 선결논점이나 답안작성 시 주요한 팁을 각주에 기재하였으며, 검토의 문구는 판례의 논거를 적극 활용하였습니다.

## 강의 특징

- (1) 문제는 **대법원 판례를 최우선**으로 하여 출제함을 원칙으로 하였습니다. 논문의 내용을 기반으로 출제하는 경우, 대법원 판례의 범위를 넘어가는 내용은 최소화하였습니다.
- (2) **논문 원문을 전부 읽을 정도로 수험생은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따라서 논문 내지는 쟁돌 유형 등 GS문제에서 다루기 힘들지만 중요한 쟁점은 요약하여 보충자료로 제공합니다. 또한, 판례 통문제로 대비해야 하는 문제의 경우 답안지 형식으로 판례를 분설하여 제공합니다.
- (3) **꼼꼼한 채점**을 약속드립니다. 판례의 정밀도, 학설 및 검토의 타당성있는 논거, 분량조절, 문제의 소재 등 답안지 전반에 관한 심도있고 자세한 조언을 드리며, 수강생과 끊임없는 의사소통으로 합격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해 돕겠습니다.

## 강의 계획

|     |                               |
|-----|-------------------------------|
| 제1회 | 총칙 및 특허요건<br>(특유발명, 특유청구항 포함) |
| 제2회 |                               |
| 제3회 | 특허요건 및 출원절차                   |
| 제4회 | 특허권 및 침해                      |
| 제5회 |                               |
| 제6회 | 심판·소송·PCT                     |
| 제7회 |                               |
| 제8회 | 전범위                           |

· 과목 특성상 출제범위 외의 논점이 일부 포함될 수 있으며, 시험범위는 지속적으로 누적됩니다.

## 2020년 강의 계획

|     |                           |
|-----|---------------------------|
| 5월  | 실전GS-A, 실전GS-B, 특·상 콜라보GS |
| 6월  | 기초GS, 실전GS-A              |
| 7월  | 기초GS, 실전GS-A, 실전GS-B      |
| 8월  | 실전GS-A, 실전GS-B, 특·상 콜라보GS |
| 9월  | 실전GS-A, 실전GS-B, 특·상 콜라보GS |
| 10월 | 최종정리                      |

- 실전GS-A와 실전GS-B, 콜라보GS는 모두 다른 문제로 구성됩니다.
- 실전GS-B는 실전GS-A에 비하여 2020년의 최신 논점을 더 포함하고 있으며, 비슷한 난이도로 구성됩니다.

제56회 변리사시험에서의 성과

제56회 변리사 2차시험 특허법 제3문

(4) 위 사실관계와 달리, 특허권자 甲(원고)은 소외 X와 이 사건 방법발명에 대해 통상실시권 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 해당 계약에는 이 사건 방법발명의 실시장소를 제한하고 타인에게 재 실시 허락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피고 丁은 소외 X로부터 이 사건 방법발명의 실시에만 사용되는 이 사건 용접기(이하 ‘이 사건 전용품’이라 함)의 제작을 의뢰받고 20여 대를 제작해 소외 X에게 납품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 丁은 이 사건 전용품을 검수·시연할 목적으로 이 사건 방법발명을 실시하였다. 甲이 丁을 상대로 간접침해를 주장하며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 甲의 주장의 타당성을 논하시오. (10점)

2019년 콜라보GS 제1회 제2문

2019년 대비 한승준 특허법 통합GS 제1회

한빛변리사학원(한승준 변리사)

【문제-2】 (20점)

甲은 특허발명 X의 특허권자이다. 특허발명 X는 방법의 발명(특허법 제2조 제3호 나목)에 속한다. 설문에 답하시오. (각 설문은 독립적이다)

(1) 甲은 특허등록 이후 동종업자 乙과 통상실시권 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 (본 설정계약에는 乙이 제3자에게 다시 실시권을 설정할 수 없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음) 한편, 乙은 실시권 설정 이후 특허발명 X의 전용품인 물건 Y를 납품업체 丙에게 의뢰하여 제조하게 하였고 이를 납품받아 특허발명 X의 실시에 사용하고 있다. 丙은 물건 Y를 제작·납품하는 과정에서 물건 Y의 성능을 확인할 목적으로 특허발명 X를 사용하여 검수·시연하였다. 丙의 행위가 甲의 특허권을 침해하는지 검토하시오. (12점)